

- 약관명 : 역구매자금결제제도(판매기업중심) 업무협약서(판매기업용)
- 시행예정일 : 2022.04.18(예정)
-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: 적용
- 개정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역구매자금 결제제도(판매기업중심) 업무협약서 (판매기업용)</p> <p>&lt;생략&gt; 제1조 ~ 제7조 &lt;생략&gt; 제8조(손실부담 및 면책)</p> <p>판매기업이 전송한 추심의뢰 명세에 의해 협력기업 명의로 자금결제된 건에 대하여, 추심의뢰자료의 허위·작성오류,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협력기업이 결제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<u>모든</u>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로 하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<u>모든</u> 비용 및 손해는 판매기업이 부담하기로 하고 은행에는 <u>아무런</u>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제9조 ~ 제12조 &lt;생략&gt;</p>	<p>역구매자금 결제제도(판매기업중심) 업무협약서 (판매기업용)</p> <p>&lt;좌동&gt; 제1조 ~ 제7조 &lt;좌동&gt; 제8조(손실부담 및 면책)</p> <p>판매기업이 전송한 추심의뢰 명세에 의해 협력기업 명의로 자금결제된 건에 대하여, 추심의뢰자료의 허위·작성오류,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협력기업이 결제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채무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<u>&lt;삭제&gt;</u>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로 하며,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<u>&lt;삭제&gt;</u> 비용 및 손해는 판매기업이 부담하기로 하고 은행에는 <u>&lt;삭제&gt;</u> 청구 <u>&lt;삭제&gt;</u> 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<u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</u></p> <p>제9조 ~ 제12조 &lt;좌동&gt;</p>	